의안 번호	46

제155회 창원시의회 (제1차정례회)
제2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'26.9.3.)

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

창원시의회
(산업경제복지위원회)

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2026.9.3.

산업경제복지위원회

1. 소관부문

○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8. 26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8. 27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2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'26.9.3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3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)

가. 제안사유

○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받고자 함

➪ **정책사업 기준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 필요**

나. 市 전체 기금 현황

○ 기금조성[1]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수	2025년도말 현재액 ①	2026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6년도말 현재액 (①+②-③)	증 감 (④=②-③)
		수 입②	지 출③		
16개	417,130,032	84,671,399	74,727,081	427,074,350	9,944,318

1) **기금조성** :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**누적 개념의 규모**로서 **내부거래(예치금, 예탁금 등)를 제외**한 기금 재원의 총액을 나타냄

○ 기금운용[2] 계획

▸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					
계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융자금회수	예탁금원금회수	예치금회수	예수금	이자수입	기타수입
192,544,222	8,749,136	993,000	6,000,000	10,872,000	31,658,333	76,214,490	31,388,523	11,806,210	14,862,530

▸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지 출 계 획										
계	비융자성사업비	융자성사업비	인력운영비	기본경비	예탁금	예치금	차입금원리금상환	예수금원리금상환	전출금	기타지출
192,544,222	20,528,186	2,430,000	150,460	-	23,900,000	93,917,141	33,606,256	17,901,528	-	110,651

다.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: 2건

1) 자활기금[3](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)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2025년도말 조성액ⓐ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말 조성액ⓔ=ⓓ+ⓐ	비고
	수 입ⓑ	지 출ⓒ	증감ⓓ=ⓑ-ⓒ		
2,745,540	88,450	133,605	△45,155	2,700,385	

○ 자금운용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지출액 (A)	기정액 (B)	증 감 (A-B)	비 고
계		2,533,990	2,533,990	0	
지출	국민기초생활보장 (사 회 복 지 과)	133,605	108,000	25,605	· 2026년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(행복꾸러미 사업단) ·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등
	재 무 활 동 (사 회 복 지 과)	2,400,385	2,425,990	△25,605	· 일반예치금 감액

2) **기금운용**: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냄
3) **자활기금**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7, 「창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 설치함

2) 식품진흥기금[4](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)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2025년도말 조성액ⓐ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말 조성액ⓔ=ⓓ+ⓐ	비고
	수 입ⓑ	지 출ⓒ	증감ⓓ=ⓑ-ⓒ		
585,526	282,848	460,058	△177,210	408,316	

○ 자금운용계획

▸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수입액 (A)	기정액 (B)	증 감 (A-B)	비 고
계		513,374	368,374	145,000	
수입	보 조 금	136,500	136,500	0	
	예탁금원금회수	145,000	0	145,000	
	예 치 금 회 수	85,526	85,526	0	
	이 자 수 입	16,348	16,348	0	
	기 타 수 입	130,000	130,000	0	

▸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지출액 (A)	기정액 (B)	증 감 (A-B)	비 고
계		513,374	368,374	145,000	
지출	식 품 안 전	440,700	290,700	150,000	· 음식문화개선사업 운영 물품 구입 · 음식문화축제지원
	재 무 활 동 (보건위생과)	72,674	77,674	△5,000	· 일반예치금 감액 · 2025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집행잔액 이자 ·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활동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· 2025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· 2025년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온도계 배부사업 집행자액 및 이자

4) **식품진흥기금**: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, 「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」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2000년에 설치함.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전현주)

○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창원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되고 있는 총 16개의 기금 중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[5]에 따라 정책사업 기준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 변경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승인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○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, 식품진흥기금 2건임.

○ **자활기금**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

- **정책사업①국민기초생활보장(사회복지과)**의 경우 기정지출액 108,000천원 대비 **23.71%, 25,605천원을 증액**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 변경하였기에 의회의결 사항에 해당됨.

※ 증액사유 : 행복꾸러미 사업단 사업장의 2026년 환경개선 사업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임

- **정책사업②재무활동(사회복지과)**의 경우 기정지출액 2,425,990천원 대비 **1.06%, 25,605천원을 감액**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의회의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.

※ 감액사유 : 일반예치금 축소

○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(사회복지과) 지출계획 변동 사유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자활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,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준 사업비 편성비율은 4.93%로,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[6]에 비추어 기금의 활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

5)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**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**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6) **(참고)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 편성비율이 10% 미만인 기금은 고유목적사업 내에서 사업 분야·대상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**

자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○ **식품진흥기금**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

- **정책사업①식품안전**의 경우 기정지출액 290,700천원 대비 **51.6%, 150,000천원을 증액**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 변경하였기에 의회의결 사항에 해당됨.

※ 증액사유 : 음식문화개선사업 운영 물품 구입 및 음식문화축제지원임

(음식문화축제지원 사업은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나, 본예산 미편성에 따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사업비를 재편성함.)

- **정책사업②재무활동(보건위생과)**의 경우 기정지출액 77,674천원 대비 **6.44%, 5,000천원을 감액**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의회의결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.

※ 감액사유 : 일반예치금 축소와 2025년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활동비 지원사업, 2025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, 2025년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 온도계 배부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따라서 식품안전 지출계획 변동 사유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